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62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이성윤·김준혁·박희승

박민규 • 복기왕 • 정일영

한준호 · 서영교 · 김동아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국민적 법감정에 어긋나고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사면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을 할 수 없다.

-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
-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 3.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
- 4. 「군형법」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 5.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 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권의 제한) (생 략)	제6조(복권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동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사
	면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도 이
	<u>와 같다.</u>
<u> <신 설></u>	제9조2(사면 등의 제한)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
	면・감형을 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u>범한 자</u>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를
	<u>범한 자</u>
	3.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
	<u>를 범한 자</u>
	4. 「군형법」 제2편제2장의 죄
	<u>를 범한 자</u>
	5.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
	<u>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u>
	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
	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
	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
	한 범죄를 범한 자